

■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 추계신고

기준 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주요경비(입증)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 50%' 적용)
-----------	---

■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구 분	영세율제도	면세제도
특징	소비자국 과세원칙, 수출장려	저소득층의 역진성 완화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제불가
면세정도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국세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징수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 자금출처조사 소명금액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미입증금액 ≤ Min[취득 재산가액 × 20%, 2억 원]

■ 양도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① 환치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②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② 보류지로의 총당
③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③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④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④ 양도담보 제공
	⑤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
	⑥ 연결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⑦ 신탁해지
	⑧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연금저축 한도(퇴직연금포함 통합 한도)	공제율
4,500만 원 이하(5,5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15%
4,500만 원 초과(5,500만 원)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의 민기로 계좌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적용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소득원천	세금의 종류	세율	종합소득 합산 여부
이연퇴직소득	연금 소득세	퇴직소득세율 × 70%(60%) (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	합산하지 않음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3~5%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15%)
그 외 소득 (운용 수익 및 공제받은 자기부담금)			

이패스코리아 회원님께 드리는 선물

▶ 신규가입 선물

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시 수강료 5% 할인쿠폰 지급

금융 & 은행자격증 환승 이벤트

▶ 금융, 은행자격증 타사 수강내역 또는 시험 응시내역(독학) 첨부 시 판매가의 20% 할인 혜택!

(단, FPSB와 FP협회의 수료과정은 10%만 할인 제공)

New 2023년 연금상담전문가 과정

▶ 국내 최초 연금상담 전문자격증!

▶ 연금 준비단계부터 은퇴 후 전반적인 연금생활까지, 공적·사적 연금 등 연금에 관한 종합적·전문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 구성 : 정규이론 (한국FP협회 기본서 + 이패스 요약 & 문제풀이집 제공)

▶ 교육비 : 135,000원 (5명 이상 동시신청 시 10% 추가할인)

▶ 계속교육학점 40학점 인정

2024년 시험안내

▶ [400%환급반] 2024년 3월 16일 대비 AFPK패키지

- 구성 : 이론 + 문제풀이 + 핵심요약 + 최종모의고사
- 교재 : 기본서(8권), 모듈별 핵심요약집/문제집, 최종실전모의고사
- 혜택 : 상위(10위) 합격 시 400% 환급, 일반 합격 시 200% 환급  
※ 이패스코리아 AFPK 수강(수료) 후 합격 시 CFP 정규이론 + 문풀강의 무료 제공!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

▶ 2024년 5월 18일 대비 CFP 프리미엄 패키지

- 구성 : TVM + 이론 + 문제풀이 + 최종모의고사
- 교재 : 기본서(9권), 재무계산기, 문제집, 요약집, 모의고사
- 교육비 : 450,000원(대학생 할인 400,000원)

계속교육학점 과정

▶ 윤리1학점 포함 일반 과정 최소 2학점부터 최대 101학점까지 다양한 분야의 단과, 종합, 패키지 구성 & 수료보고 대행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홈페이지 <http://www.epasskorea.com>  
상담전화 1600 - 0522

시험에 나오는 핵/심/체/크

2023년 11월 18일(토) 시험대비

AFPK

이패스코리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AFPK 시험정보 ❖

▶ 시험 시간 : 11월 18일 (토) 14:00 ~ 18:00

▶ 합격자 발표 : 12월 8일 (금)

1과목 재무설계개론 및 직업윤리

- 2000년 4월 한국FP협회 창립, 13번째 회원국(6월 업무 제휴)
- 2004년 한국FPSB와 한국FP협회 분리, AFPK 자격인증요건 (교육, 시험, 윤리)
- AFP자격국가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
- 자격갱신 : 유효기간 2년, 20학점 (윤리학점 2학점)
- 재무설계사 : 재무전문가,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 부채관리 : ① 담보인정비율(LTV)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③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 90일(3개월) 이상] 총채무액 15억, 보증인 동일 효력
- 법원 : 개인회생제도(총채무액 25억), 개인파산제도(농비, 도박 면책 허용 안 됨),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유사, 보증인 동일한 효력 없음
- 전문금융소비자 적용  
6대 판매규제 중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광고규제), 위법계약해지권
- 일반금융소비자 적용  
6대 판매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광고금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 충실의무, 고지의무, 진단의무(투자자 적합성), 자문의무, 갱신유지의무 윤리원칙
  - \* 고객우선의 원칙, \* 성실성의 원칙, \* 객관성의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 전문가 정신의 원칙, \* 능력개발의 원칙, \* 비밀유지의 원칙, \* 근면성의 원칙
  - 한국FPSB에 대한 통지의무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1개월 또는 30일 이내 한국FPSB 통보
  - 결격사유 (13가지로 제시, 파산 5년, 금고 3년, 신념 1년, 음주·약물 1년, 등)
- AFPK® 자격상표
  - 항상 대문자로 사용해야 한다. ★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큰 대문자와 작은 대문자 혼용 가능)
  -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항상 '®' 심볼을 위치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이나 문장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위치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심볼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2과목 은퇴설계

- 국민연금 \*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년 이내, 50세 이상 5년 이내 / 추후납부 10년 미만(119개월)의 범위 내(최대 60회 분납가능)
  -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25%) 12개월 한도
  - 출산크레딧 :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5자녀 이상(50개월) / 군복무크레딧 6개월
- 노령연금 \*
  -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일찍, 1년 당 6%감액), 소득이 있는 업무(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노령연금연기제도(노령연금수급연령(지급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부터 5년의 기간 이내, 신청횟수 제한 없음, 매1년당 7.2%)
- 분할연금
  - 이혼, 수급개시연령 도달,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해당 연금액의 1/2
  - 반환일시금 \* 반납은 최대 24개월까지 허용
  - 중복급여의 조정 \* : 노령연금 선택(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지급)
  - 공적연금 연계 \* : 10년(군인연금과 연계 20년), 임의계속가입기간(연계대상기간 미 포함, 연계급여 연금액 산정 시는 포함)
- 퇴직 급여 직접 지급 가능  
55세 이상,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 담보제공 및 인출 : DB형은 중도인출 금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등록금, 결혼비용, 장례비 부담]은 담보제공에 한함

- 연금지속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 16.5%, 해당 금액 초과는 13.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단, 연금지속계좌는 600만 원)이고 ISA만기 이체 관련 한도 300만 원 포함하는 경우 1,200만 원임)
- 중도인출 :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그 밖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

## 3과목 부동산 설계

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동산 활동 및 시장의 국지화</li> <li>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현장답사활동이 필요</li> <li>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는 근거가 됨</li></ul>
부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가상각 적용이 배제</li> <li>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li></ul>
영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가상각 적용이 배제</li> <li>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li></ul>
개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개별성으로 인해 비대체성의 특성을 갖고 있음</li> <li>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li></ul>

수요의 변화(증가요인)	공급의 변화(증가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구 및 가구 수의 증가</li> <li>소득수준 증가(정상채의 경우)</li> <li>금리의 인하</li> <li>대체재의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약화</li> <li>부동산 조세의 세율 완화</li> <li>공·사법상 규제 완화</li> <li>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급자의 수 증가</li> <li>건축기술의 발달</li> <li>원자질감과 공사기간의 축소 등</li></ul>

구분	물권	채권
법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체로 강행규정임</li> <li>물권에 대한 지배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체로 임의규정임</li> <li>특정인에 대한 요구권</li></ul>
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존·특정·독립의 물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채무자의 급부행위</li></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절대권(모든 사람에게 주장)</li> <li>배타성 존재(독점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대권(특정 상대방에게 주장)</li> <li>배타성이 없음(평등성)</li></ul>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채권에 대한 우선성</li> <li>물권 간 시간적으로 우선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채권 간 평등주의</li></ul>

- 지목**
  - 1필 1목의 원칙 단,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의 일부가 주택 또는 시설관리사무소 등으로 쓰이는 면적은 대로 한다.
  - 하천과 구거 : 하천(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구거(인공적인 수로부지 또는 자연적 유수의 부지로 소규모 수로부지)
  - 도로 : 휴게소부지도 도로에 해당함
  - 부호의 사용 : 초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차/천/원 은 제외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구분	경매	공매
명도책임	매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입자신은 한국자산관리공사</li> <li>수탁재신은 매도인</li> <li>압류재산과 국유재산은 매수인</li></ul>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후 명도소송 진행	인도명령제도 없으며 명도소송만 가능
보증금액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가격의 10% (1천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매각방법	기일입찰 방식	기간입찰 방식

구분	해제	해지
효력	소급효	장래효
의무	원상복구의무	청산의무
손해배상책임	인정	인정
적용	1회성 거래(매매계약 등)	계속적 거래(임대차 등)

구분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열악	양호
건축물	노후·불량	노후·불량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음	실시함
세입자 대책	있음	없음
개발부담금	없음	부과(초과이익환수법)

- 리츠**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일반 REITs) : 실체형 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명목회사

## 4과목 상속설계

- 상속결격**(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음), 고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조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 안 됨. (낙태도 상속결격)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됨) 사기, 또는 강박, 위조, 변조, 파기

-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 선사망, 상속결격, 동시사망의 추정 또한 상속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상속의 승인과 포기**(고려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 종대한 과실 없어야함, 3월내에 한정승인 가능,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미성년자의 특별한정 승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봉서 표현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

- 간주상속재산** :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단,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제외

- 추정상속재산** :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5년 이내)

-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분납 : 1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 : 2천만 원 초과, 물납 : 2천만 원 초과, 증여는 물납 불가

- 비과세 증여재산** : 연간 4천만 원 이내의 보험금, 장애인 신탁재산(5억 원 한도)

- 증여재산가산액** : 금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번 증여와 합산 과세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
평가기간 : 상속(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평가기준일 전6개월, 후3개월)

- 계약 관계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과세 여부**
납입한 계약자 등이 생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본인이 납입한 경우 세금 없음

## 5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물리적 위태**(빙판길 운전, 주유소에서 담배 등)

- 도덕적 위태**(부정직, 무책임, 수리비 과잉 청구, 보험사기, 자동차 사고 조작, 공장에 방해 등)

- 정신적 위태**(부주의, 무관심, 고의성은 없으나 손실 발생을 방관, 태도 위태, 주의력 감소로 문 열어둔 채 외출, 정신적 위태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태에 포함)

- 보험제도의 기본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개별 수지 균등의 원칙)
※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원칙)

- 보험계약의 특성**
불요식·낙성계약, 유상·쌍무계약, 조건부계약, 사행(요행)계약, 부합계약
※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예외 있음)일 경우 무효 처리된다.

-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3가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 설명,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을 때

- 보험설계사**
제1회 보험료 수령권 / 보험대리점(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6.5%), 연간 보험금 4,000만 원 한도 내 증여세 비과세

- 감액안납** : 보험료 미납, 보험금 감액, 보장기간 동일, 해지환급금 미지급

- 연장정기** : 보험료 미납, 보험금 동일(특약은 해지), 보장기간 단축, 해지환급금 미지급

- 위법계약해지** :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상해보험** : 급격(예측불가능이나 불가피성)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세 가지 조건 충족 및 인과관계 존재해야 한다.

- 손해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및 규모가 모두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

- 주택화재보험**(화재, 벼락, 폭발, 파열 등 보상) 80% Co-Insurance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화재보험에서 일반물건(재고자산 제외)은 주택화재보험 동일하게 계산

- 배상책임보험** : 보험가액, 중복보험, 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피보험자의 과실, 즉 부주의를 담보한다.

- 자동차원제도(장기화재보험)** :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또는 이하)일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책임형태(조건부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가해자, 운행자), 손해배상 보장제도(의무보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

- 반의사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배상은 1인당 보상한도 유한,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음, 대물 보상은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운전자보험** :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의료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 6과목 투자설계

- 고용률과 실업률**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취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100 - 실업률
  -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상황	평가	비고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저평가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적정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고평가상태	내재가치 < 시장가격

자본시장선 (CM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총위험(<i>σ</i>)과 기대수익률의 관계</li> <li>효율적 포트폴리오로만 구성</li></ul>
증권시장선 (SM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체계적 위험(<i>β</i>)과 기대수익률의 관계</li> <li>개별 자산,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지라도 증권시장선상에는 존재</li></ul>

- 주식스타일**
  - 가치스타일 : 워렌버핏
    -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방법 / 저PER 투자, 고배당수익률 투자 등
  - 성장스타일 : 필립피셔
    - 기업 미래의 수익성(성장성)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운용전략 / 매출증가율이 시장보다 높으며, 고PER, 고PBR을 보이는 주식 등에 투자

- 펀드의 기준가격**
  - 국내투자 펀드는 당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 산정,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전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함
  -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를 전 종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어제의 추가변동에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 패시브 ETF 및 액티브 ETF**
  - 패시브(passive) ETF :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
    - 과리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
  - 액티브(active) ETF :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
    - 과리율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상관계수 제한 존재(비교지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

구분	주기연계증권 (ELS)	주기연계펀드 (ELF)	주기연계신탁 (ELT)	주기연계예금 (ELD)
발행기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근거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법적형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	예금
예금자보호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손익구조	사전약정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사전약정 수익률

액티브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듀레이션전략</li> <li>크레딧전략</li></ul>
패시브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덱싱전략</li> <li>만기보유전략</li> <li>현금흐름일치전략</li></ul>

전략적자산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장기적으로 자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li> <li>투자자의 투자목표(goal), 투자기간 및 투자자성향을 반영하여 수립</li></ul>
기술적자산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달성</li> <li>자산별 비중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투자전략의 일종</li></ul>

- 투자전략의 조정**
  - 리밸런싱(rebalancing)
    - 저점매수·고점매도(buy low, sell high)전략
    - 기술적 자산배분은 액티브 전략인데 비해 리밸런싱은 원래의 전략 수준으로 재조정 하므로 수동적 관점에서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임
  - 마켓타이밍(market-timing)
    -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산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자산배분
    - 비교지수를 두지 않고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에 주로 사용

## 7과목 세금설계

-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① 납부	② 총당
③ 부과처분의 취소	④ 조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5년,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